

나부터 청렴실천!!
새바람 행복경북!!

새바람 행복 경북!



알아둬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 벗어나기



건설산업기본법 기준[2019.2.15. 시행]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건설업 등록 안내

1. 건설업 등록기관

- 종합건설업 : 도지사(단,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 전문건설업 : 시장·군수

등록 없이 건설공사 수행 가능한 범위

- 종합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공사



2. 건설업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수수료 1~9만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자본금 확보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확보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목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시설·장비 확보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사진 등
 - 사무실 확보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물 내·외부 사진
- ※ 세부사항은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종합), 시군 담당부서(전문)에 문의

3. 건설업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기타
토목건축공사업	12억원	11인(토목, 건축 각 중급 2인 이상)	사무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자본금의 23~26%)
토목공사업	7억원	6인(중급 2인 이상)	사무실	
건축공사업	5억원	5인(중급 2인 이상)	사무실	
조경공사업	7억원	6인(중급 2인 이상)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	12인(중급 6인 이상)	사무실	
전문공사업(토공 등)	2억원	2인	사무실	
전문공사업 (포장, 철도궤도, 식도설치, 시설물유지)	3억원	시행령 별표2 참조	시행령 별표2 참조	
전문공사업 (철강재설치, 준설공사업)	10억원	시행령 별표2 참조	시행령 별표2 참조	

● 농치기 쉬운 신고 · 통보 안내 ●

1.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나. 통보대상

-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원도급공사(공공 및 민간 포함)
- 위 신고대상 공사를 하도급 받은 도급금액 4천만 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 제외

다. 통보주체

- 원도급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업체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하도급업체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 통보

라. 통보기한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로 각각 통보

마. 통보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전자통보

사. 행정처분

- 기한 내 미 통보 : 시정명령(미 이행 시 100만 원 과태료)
- 공사완료일까지 미 통보 · 허위통보 : 과태료(1차/100, 2차/200, 3차/400만 원)



2.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나. 신고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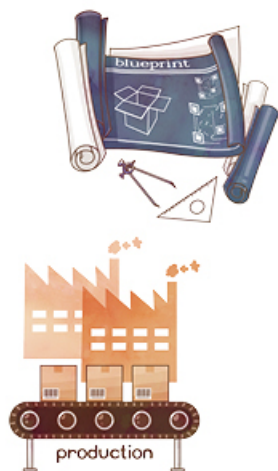
라. 신고기관

- 종합건설업 : 도지사(단,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 전문건설업 : 시장 · 군수

마.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바. 행정처분 : 변경일로부터 30일내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30, 2차/50, 3차/50만원)



3.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계획통보 의무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나. 신고대상 : 1건 공사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 의무제외	-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 - 특허·신기술 사용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계획통보 의무제외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 도급 -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다. 통보기한 :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변경/해지 포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 통보기관 : 해당공사 발주자

마. 행정처분 :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1차/100, 2차/150, 3차/150만 원)

※ 직접시공 규정 위반 : 영업정지 6월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나. 통보주체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건설업자

다. 통보기한 :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변경/해제 포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 통보기관 : 해당공사 발주자 또는 감리자

마.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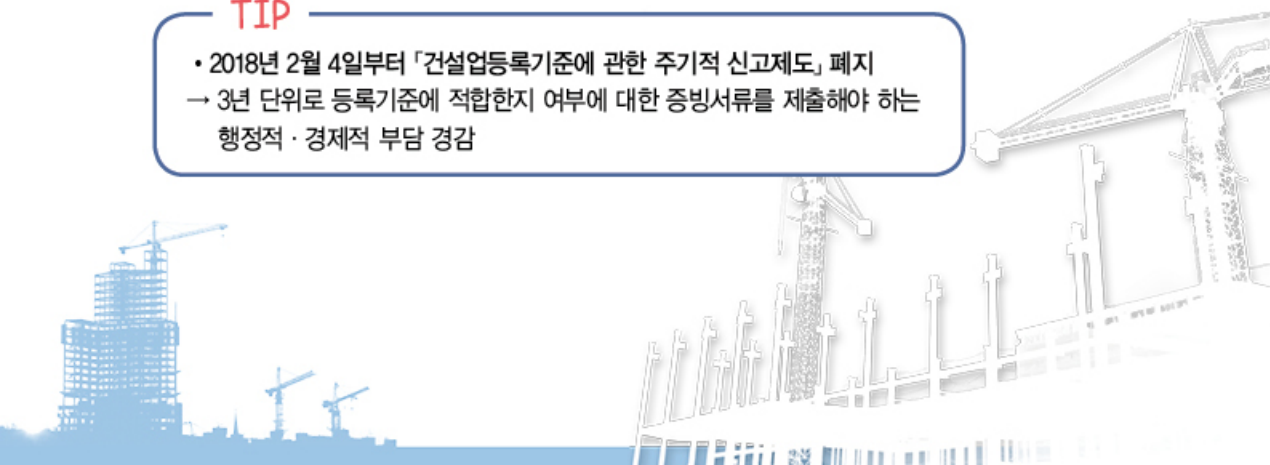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특수조건 포함)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바. 행정처분 :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1차/100, 2차/150, 3차/150만 원)



TIP

- 2018년 2월 4일부터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 3년 단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 경감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항

분류	위반내용	처분근거조항	처벌내용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 후 신규교육 미이수	법 제9조의3제1항 법 제99조제1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등) 미달	법 제10조 법 제83조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건설업 실태조사 시 관련서류 미제출	법 제49조제1항 법 제81조제9호 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대여 및 알선	법 제21조 법 제83조제5호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법 제21조의2 법 제82조제1항제2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도급 및 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5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동종업종 간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기한 내 미지급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법 제34조제1항, 제2항 법 제81조제4호 법 제82조제1항제8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법 제68조의3제1항 법 제81조제4호 법 제82조제1항제8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시공 및 기술 관리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또는 배치기준 위반	법 제40조제1항 법 제81조제7호 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법 제40조제2항 법 제100조제2호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세부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 별표7 참조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 880-3914, 3916

예상하지 못한 행정제재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